

# 건축자재,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 정부, 구매권장 대상제품 상충 … KS마크와 환경마크 제한 물질 틀러

건축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KS인증제품과 환경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성격이 달라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화학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자재 생산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건축법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KS마크 인증제품에는 친환경적이지 못한 제품도 포함돼 있어 환경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마크를 받은 친환경제품과는 상충되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에서는 2004년1월1일 녹색구매제도를 시행했다. 녹색구매제도란 제품을 구매할 때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마크를 획득한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녹색구매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녹색구매제도의 영향을 받아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S마크를 받은 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KS마크는 유성도료, 락카, 바니시를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한 기준은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위주로 돼 있어 환경마크와는 다르다.

환경마크는 페인트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물질 방출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은 없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포함돼 있는 유성도료는 KS마크를 받을 수 있어 건축법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제품이 될 수 있지만 친환경 제품이 아니므로 환경법에서 사용과 구매를 권장하는 제품이 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및 구매가 권장되는 제품이지만 환경법에서는 비친환경 제품이 돼 사용과 구매가 제한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화학기업 관계자는 “KS마크와 환경마크는 제한하는 물질이 달라 모두 인증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KS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희 기자>

<화학저널 2004/04/09>